

국회의원(추미애) 징계안

의안 번호	12726
----------	-------

요구연월일 : 2025. 9. 5.

요 구 자 : 유상범 · 김도읍 · 정희용
김은혜 · 최은석 · 광규택
최수진 · 박상웅 · 서명옥
조승환 · 조지연 · 강선영
박충권 · 박수민 · 신동욱
우재준 · 박준태 · 송석준
조배숙 · 주진우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추미애)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의무가 있음.

나. 국회의원 추미애는 2025년 8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면서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음. 또한 국회 운영의 기본은 교섭단체별 자율적 권한과 원칙 존중에 있고, 각 교섭단체가 간사를 선임하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9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 절차를 무력화하고 방해한 것은 위원장 직권을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간사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4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

다. 또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할 때에는 그 대상 선정부터 여야간 긴밀한 협의를 한 후 합의에 이른 대상에 한해 고발을 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은 일방적으로 고발대상을 선정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음.

라. 추미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순직해병특검으로 자료를 입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고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는데 특검 측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일부 여당 위원들에게만 수사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각종 사법기관들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사 내용 유출이나 고발 청탁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임.

마. 특검에서 제출한 자료를 추미애 의원이 고의적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바. 추미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 증원의 건을 심사하면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건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 설명이나 심사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통한 안건의 문제점 시정이나 다양한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토론 역시 독단적으로 1회로 제한하여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를 방해하였음.

사. 위와 같이 국회의원 추미애는 「국회법」 제49조제2항, 「형법」 제123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에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